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종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3449 번 호

발의연월일: 2020. 9. 2.

발 의 자:최종윤ㆍ기동민ㆍ김승남

박성준 · 서동용 · 양정숙

양향자 · 오영환 · 이용빈

이인영 · 인재근 · 조승래

허종식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 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. 그러나, 경증의 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문자를 인식하기 어려워 점자 여권 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장애 등급에 관계 없이 시각장애인이 점자 여권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"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 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"를 "「장애인복지법」 제 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이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여권의 발급 신청) ① (생	제9조(여권의 발급 신청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외교부장관은 <u>「장애인복지</u>	②
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	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
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	<u> 애인이</u>
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제1항	
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	
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	
권을 발급할 수 있다.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